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호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9호, 2020.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장”을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을 “3일”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위생등급의 광고)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법 제47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 이외에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②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지정받은 위생등급,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분야가 적합하지”을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로 한다.

별표 1의1 기본분야 3 중 “조리종사자는 위생모”를 “식품을 조리 또는 포장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별표 1의1 일반분야 15 중 “조명장치에”를 “조명장치, 환풍장치에”로 한다.

별표 1의1 공통분야(가·감점) 중 가점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평가항목	배점
가점 1	○거리두기 실천 ①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기 또는 ②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또는 ③이용자 간격 유지를 위해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또는 ④의자를 한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마주보지 않도록) 또는 ⑤기타 이용자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인정 방법	2
	○식문화 개선 실천 : ①국·찌개뿐만 아니라 반찬까지 덜어먹기 실천 또는 ②1인 반상 제공 또는 ③개인별 반찬 제공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음식점·카페, ② 책임자·종사자) 내용 등을 반영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 경우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② 유증상자 퇴근조치(규칙운영 등), ③ 주기적 환기 실시, ④ 공용물건 및 식탁의 주기적 소독, ⑤ 이용자 발열 검사, ⑥ 계산 시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 설치 등, ⑦ 주기적 종사자 교육, ⑧ 대기자 간 1m 간격(안내, 바닥시설) ⑨ 개별포장 수저 제공	7개이상 : 3.0□ 6개 : 2.5□ 5개 : 2.0□ 4개 : 1.5□ 3개 : 1.0□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지정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장소재지 (행정구역 상 지,번의 변경은 제외)			
영업의 형태 (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변경)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3(지정사항 변경 등) ① 제7조에 따라 음식점위생등급 지정받은 영업자가 <u>영업장</u>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lt;신 설&gt;</p>	<p>제7조의3(지정사항 변경 등) ① --- ----- -----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u>영업장</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3일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4(위생등급의 광고) ① 제7조 제5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받은 영업자는 법 제47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 이외에 <u>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u></p> <p>②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u>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u></p>

장·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지정받은 위생등급,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47조의2의 제6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본분야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 4. (생략)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  
-----  
-----  
-----.

1. -----  
----- 2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
2. ~ 4. (현행과 같음)